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의 규정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or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저자
(Authors) 심종석
Chong-Seok Shim

출처
(Source) [관세학회지 11\(1\)](#), 2010.2, 437-460 (24 page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1\(1\)](#), 2010.2, 437-460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관세학회](#)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497714>

APA Style 심종석 (2010).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의 규정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1(1), 437-460.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의 규정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or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심 종 석(Chong-Seok Shim)**

Abstract

The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l Contracts(UECIC) aims to enhance legal certainty and commercial predictability where electronic communications are used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ontracts. It addresses the determination of a party's loca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and the criteria to be used for establishing functional equivalence between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aper documents including original paper documents as well as between electronic authentication methods and hand written signatures. In this case, some of the important legal concepts are following. Firstly electronic communications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the parties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and data message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Secondly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Finally automated message system means 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data message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intervention by a natural person each time an action is initiated or a response is generated by the system.

Key-Word : UECIC, Int'l Contracts, Functional Equivalence, Electronic Communications, Data Message, Information System, Automated Message System.

목 차

I. 서론

II. UECIC의 입법취지와 법적 의의

III. UECIC 규정해석과 적용상 유의점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본 논문은 2009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00249).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경영학박사·법학박사)

1.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기인한 국제경제환경은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신속·민활하게 변모해 가고 있다. 당해 변모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을 내부화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 그 과정과 절차상 배타적으로 형성되고 있거나 기 형성된 전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제경제사회의 전반을 통합·일원화하여 상호 상승작용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긍정적으로 배가하고 있는 추이로부터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국제경제환경의 순기능적 고도화 추이에 비추어 본 고에서 주시하고자 하는 국제계약법 분야도 동일한 차원에서 날로 진화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실체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제주체 간 신속·민활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 과정과 절차로부터 필요외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바에 목적을 둔 경제적 실익(economic utility)에 집약된다. 당해 경제적 실익은 또 다른 시각에서 전통적 상거래에 기한 상관습에 일대 변혁을 주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범의 당위를 시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현대 국제계약법의 추이를 주시함에 있어 특기할 수 있는 현상은 ‘국제법규범의 통일화’와 ‘국제상관습의 체계화’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대개 정보통신기술과의 유기적인 융합 내지 수용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경제적 실익을 담보하기 위함에 두고 있다.

한편 국제상거래 실무패턴의 변화 또한 모름지기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형성된 상관습에 정보통신의 발전으로부터 파생한 다양한 수단을 접목하여 국제상거래 활성화를 부양하는 추이로 진전되고 있는데, 그 실질적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이, 곧 전자문서(data message)라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국제계약법의 실질적 변화의 주체로서, 곧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계약체결 내지 이행을 위한 매개의 수단(means of intermediary)이 종이문서(paper-based document)에서 전자문서로 치환되면서 발생한 법적 경화(hardship)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실체적 단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국제상거래 활성화의 기반으로 전자문서는 그간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함께, 나아가 이것들과 연계·융화되면서 현대 국제계약법의 추이를 급변케 하는 동인으로 기능하였는 바, 당해 새로운

개념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를테면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정보 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이하 'IPS'),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전자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s of data messages) 등이다(北川善太郎, 2002; 심종석, 2004).

주지하듯 이들 개념은 그간 국제상거래에 있어 새로운 법규범을 제정하는 원인이 되었거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상관습의 체계화 내지 재·개편을 유도하는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환언하면 이상의 개념들은 종래 국제계약법규범이 전자문서를 수단으로 한 IPS의 사용으로부터 야기된 법적 장애를 여하히 해결할 수 있는지, 나아가 전자상거래 기반으로서 IPS를 통해 형성된 상관습에 기하여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확신에 기한 합목적성(purposiveness) 내지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을 담보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법기능적 차원에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그간 종이문서에 기초한 국제계약법규범은 전자문서에 의한, 곧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에 의한 계약에 있어 그 적용상 상당한 혼선과 문제점을 야기하였는데, 일례로 '전자계약의 성립요건',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과 승낙의 기준',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자계약 당사자의 소재지',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및 형식요건', '전자문서 송·수신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증거능력',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법적 지위' 등은 그간 실질적 법적 논점의 대상이었다.¹⁾

2. 연구의 대상과 목적

이상의 법적 논점에 대하여 그간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나마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고 '국제계약법규범의 통일화'와 '국제상관습의 체계화'에 기한 법적 경화의 해결책 모색에 전방위의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당해 노력은 그 주체로서 각양의 국제기구 내지 국제연합 단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바, 이에 가장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주축이 되었던 기구가, 곧 국제상거래

1) 이상의 개별 논제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로서 참조할 수 있는 문헌은 최준선(2001), 八尾 晃(2001), Grijpink(2001), Katsh(2001), 國生一彦(2001), 北川善太郎(2002), 오원석(2002), 이충열(2003), 허해관(2004), 김진환(2004), 한병완(2005), 오병철(2006), 심종석(2004, 2009), 오세창(2009) 등. 다만 2008년 이전 이상의 논문들은 UECIC가 성안되기 이전 협약초안(preliminary convention)이 그 대상이 되고 있기에 규정해석과 그 유의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논문과는 일말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한다.

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였다.

연혁에 비추어 UNCITRAL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전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승인 또는 수용될 수 있는 일련의 법원칙들을 꾸준히 공표하였는데, 이들 법원칙은 기 언급한 바대로 전통적 종이문서에 기한 법적 장애[hardship]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입법성으로 간주된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 이하 'MLEC'),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2001),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fund transfer, 1997) 등은 그 대표적 실례라 할 수 있다.²⁾

살피기에 이상의 법원칙 등은 i) 구속력 있는 통일법(unification law)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국내법이나 국제법규의 해석과 보충 내지 입법 표준으로서, ii) 그리고 계약당사자에게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참조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iii) 나아가 각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는 향후 야기되는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iv) 일응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으로서 법적 성과를 개진하였다.

결국 일반원칙으로서 이상의 법적 성과는 그 기능상 당해 법원칙의 개정·보완에 대한 유연성이 수반되어 있어 시의적으로 급변하는 국제상관습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여 각국 국내법의 재·개정시에나 때로는 새로운 국제상관습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적 성과는 일반원칙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상사계약(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에 임한 계약당사자의 이해를 적의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 force)을 온전히 확보할 수 없었던 까닭에, 당초 예견되었던 바 그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법 제정의 당위는 지속적으로 주창되어 왔다.

이 같은 새로운 통일법 제정의 당위에 기하여 UNCITRAL에서는 종전까지 국제상사계약상 전자문서를 매개로 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 국제계약상 부각된 법적 문제점 내지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비로소 새로운 국제통일계약법의 성안 작업에 착수하였는 바,³⁾ 그 입법적 산물이 본 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취한 '국제

2) 전문은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html」을 참조.

3) 그 시초는 UNCITRAL의 WG(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에 의해 2001년 제34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통일법, 곧 UECIC 기초가 되었던 최초 법원칙이 '데이터 메시지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국제] 계약협약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ntracts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이었다. 동 초안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CISG')를 모토로 각양의 UNCITRAL 모델법을 병합하여 현행 UECIC의 단초가 되었다. 동 초안에 반영된 주요 법규범은 'EU Directive', 캐나다 '통일전자상거래법'(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 UECA),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이하 'UETA') 등이다. 이상의 각국 국내법은

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 : 이하 'UECIC')이다.⁴⁾

모름지기 UECIC는 다자간 협약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고 2006년 이후 2년 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해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5일 부 UECIC에 공식 서명해 두고 있다.

본고는 전자상거래를 통일된 국제협약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최초의 입법으로서 그 법적 지위를 표창하고 있는 UECIC의 규정내용을 해제하고, UECIC 적용상 적의 고려되어야 할 유의사항을 되짚어, 이로부터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상사계약의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일견 참조할 수 있는 법적·상무적 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UECIC의 입법취지와 법적 의의

1. UECIC의 입법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간 UNCITRAL에 의해 공표된 제반 개별 법규범 내지 일반원칙 등은 법명에서 표창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상거래 계약당사자간 전자문서를 매개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음과, 그나마 현재까지 전통적 국제상거래에 있어 기축 법제가 되고 있는 CISG를 적용할 경우 법적 장애 및 흠결이 예견되어 이를 보충할 필요에 따라 성안되었다(Eiselen S., 2000).⁵⁾

최종 협약으로서 UECIC에 적의 수용되었는데, 그 배경은 UECIC를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될 수 있는 협약으로서 그 지위를 담보해 두기 위함이었다(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s. 14-21, 75, 81.,

4) 전문은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html」을 참조.

5)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한, 그간의 UNCITRAL 입법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통일법으로 평가된다. 연혁에 비추어 CISG는 서로 다른 각양의 법체계를 조화롭게 통합해 두고 있는 반세기에 걸친 국제적 노력의 산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본고 제출시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UN에 동 협약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 협약 제101조 (2)항에 의거 2005년 3월 1일부로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우리 민·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점한다.) 전 세계 75개국이 비준·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으로서 지위를 점한다. 모름지기 CISG가 국제상거래에 있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명칭에 있어 CISG는 성안된 지명을 차용하여, 달리 'Vienna Convention', 'UNCCISG' 등으로도 사용되고도 있으나, 본고는 이하 동 협약에 대한 UNCITRAL의 공식 명칭을 좇

명실공히 UECIC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전자문서 내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상사계약상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과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기능상 '기술중립성 및 등기능성의 원칙'(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functional equivalence)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국제사법상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표창하고 있다(Guide to enactment of the MLEC, I, E).

환언하면 UECIC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이 국제상거래의 효율성 증대 및 각국간 무역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종전 격지자간 국제상사계약에 입한 당사자와 당해 시장에 새로운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전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국제무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CISG를 근간으로 제반 국제통일법규범의 적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UECIC를 기반으로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그 배경에 두고 있다(UN Assembly, 「A/RES/60/21」, Annex).

결국 UECIC는 상이한 법률·사회·경제제도를 가진 가입국(contracting state)이 적의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에 따른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UN Assembly, Ibid.).

2. CISG 등의 부속협약으로서 법적 의의

UECIC는 CISG를 비롯하여 여타 국제협약상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에 관한 부속협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표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UECIC 가입국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를 포함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1958),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제한기간에 관한 협약 및 그 의정서'(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protocol : 1974), '국제무역에서 터미널 운송업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transport terminal in international trade : 1991), '독립보증장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dependent

아 이하 'CISG'로 통일한다. 아울러 국문의 경우 '국제물건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또는 '국제동산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등으로 칭하고도 있으나, 본고는 동 협약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상무적 이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통일한다.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 : 1995), ‘국제무역에서의 수취계정채무의 양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 2001) 등의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경우 당해 국제협약상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UECIC가 적용된다는 것이다(UECIC 제20조 제1항).

그러나 본 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협약 이외에도 UECIC 가입국이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여타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조약(treaty) 또는 협정(agreement)이 적용되는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에도 응당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UECIC 제20조 제1항). 다만 당해 국가가 본 항에 기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동 규정 배제의 조각사유를 구성한다.

결국 UECIC는 국제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되는 이상의 국제협약의 부속협약으로서 그 보충적 역할(gap-filling role)을 내재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국제무역법규범의 적용에서 비롯되는 장애 및 국제계약상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UECIC 채택이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상업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가입국으로 하여금 현대 국제상사계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의 기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3. UECIC의 구성체계

UECIC는 전문(preamble) 외에 총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문별 내용은 전문을 위시하여 차례로, 제1장은 적용영역으로서 적용범위(제1조), 예외조항(제2조), 당사자 자치권(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정의(제4조), 해석(제5조), 당사자 위치(제6조), 정보요건(제7조) 등의 일반규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3장은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제8조)과 형식요건(제9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제10조), 청약의 유인(제11조),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제12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제13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제14조) 등에 대한 법적 기준 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제4장은 최종규정으로서 기탁처(제15조), 서명·비준·수락 또는 승인(제16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제17조), 국내영역 단위에서의 효력(제18조), 적용범위의 선언(제19조), 기타 국제협약상 의사표시의 교환(제20조), 선언의 절차와 효력(제21조), 유보 및 발효(제22조-제23조), 적용시기 및 폐기(제24조-제25조) 등에

대한 절차상 요건 등을 다루고 있다.

<표1> UECIC의 조문구성과 주요 골자

구 분		조 문 명 과 주 요 골 자
제1장	제01조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 이국(different states) 간 당사자의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
	제02조	예외(exclusions) : 가사용, 외국환거래, 금융자산증권, 양도성증권 등을 배제
	제03조	당사자 자치권(party autonomy) : 임의규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
제2장	제04조	정의(definitions) : 의사표시,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문서, 송 · 수신자, 정보시스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영업소 등을 규정
	제05조	해석(interpretation) : 국제적 특성, 통일성, 신의의 준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해석
	제06조	당사자의 위치(location of the parties) :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 복수이상의 경우 가장 밀접한 장소, 영업소 배제 사유, 도메인 · 전자우편 등의 추정력을 부인
제3장	제07조	정보요건(information requirements) : 타 법률과 관계상 당사자 정보공개 영향력 부인
	제08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legal recognition electronic communications) :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및 당사자 합의의 추인
	제09조	형식요건(form requirements) : 형식요건의 부인 및 전자적 의사표시의 충족요건
	제10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 · 수신시기(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로부터 기산(발신주의의 채용) 수신시기는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검색할 수 있는 때
	제11조	청약의 유인(invitations to make offers) : 당사자 송낙 기속의사의 유무를 조건으로 청약의 유인을 구별
	제12조	계약체결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유효성 및 집행력을 인정
	제13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 :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당사자 법적 책임 감면을 부인
	제14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error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에 대한 철회권의 인정요건
제4장 6)	제15조	기탁처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제16조	서명 ·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 2006년 01월 16일 ~ 2008년 01월 16일까지 개방
	제17조	지역경제통합기구참여 :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를 승인과 요건
	제18조	국내영역단위에서 효력 :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과 제한요건
	제19조	적용범위의 선언 : 적용범위 선언에 있어 제한과 배제의 효과를 인정
	제20조	다른 국제협약상 의사표시 교환 : (상기 2. CISG 등 부속협약으로서 법적 의의 참조)
	제21조	선언의 절차와 효력 : 선언의 확인에 대한 서면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2조	유보 : 유보의 허용불가
	제23조	발효 : 발효 및 기간에 대한 요건과 절차
	제24조	적용시기 :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소급불가를 규정
	제25조	폐기 : 폐기의 요건과 절차 및 효력발생

이상의 조문구성을 도식화 하면 위 <표 1>과 같고, 이하 선언적 절차규정으로 서 제4장(제15조-제25조)을 제외하고 규정별 주요 골자를 되짚어 이를 해제·평가하면 위와 같다.

III. UECIC 규정해석과 적용상 유의점

1. 적용영역

1)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적용범위에 있어 UECIC는 CISG 제1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업소(business place)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different states)에 있는 계약당사자간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의 이용에 적용된다(UECIC 제1조).

이는 UECIC가 국제협약으로서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표창하고 있음을 함의하는데, 환언하면 국제성 체화 요건에 비추어 영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이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서로 다른 법영역(legal territory)하에서 법적용에 따른 규율의 범위를 달리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심종석, 2009).

본 조항에서 의사표시(communication)는 UECIC의 목적상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청약과 청약에 대한 승낙을 비롯한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당사자 선택에 따른 모든 진술(statement)·선언(declaration)·요구(demand)·통지(notice)·요청(request)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는 당사자가 전자문서(data message)의 방법으로 행한 이상의 모든 의사표시로 정의된다(UECIC 제4조 (a)-(c)).

한편 UECIC상의 전자문서는 의미상 MLEC의 규정과 다름이 없는데(제2조 (a)),⁷⁾ 그 내용은 전자적(electronic)·자기적(magnetic)·광학적(optical) 또는 유

6) 선언적 절차규정으로서 제4장(제15조-제25조)의 규정해제 및 평가는 본 고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7) i) 국제기구 및 각국 국내법에서 전자문서(data message)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심종석(2004)를 참조. ii) 본 논문을 참조할 경우 제반 국제기구 및 각국 국내법에 정의되어 있는 전자문서는 어느 경우에서나 당해 용어의 표현과 내용차이를 불문하고 공히 “특별한 제한 없이 전자자료교환(EDI), 전자우편,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 등을 포함한 전자적·광학적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작성·발신·수령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MLEC 정의와 동일시 할 수 있다. 다만

사한 방법으로 작성(generated)·전송(sent)·수신(received) 또는 저장(stored)된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자료교환(EDI)·전자우편·전보·전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나 다만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른 한편 UECIC상 당사자 영업소의 소재에 따른 고려사항과 그 적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국적과 당해 계약에 대한 민사적·상사적 성격에 대한 고려사항은 CISG와 마찬가지로 배제되어 있다.

2) 예외조항(exclusions)

예외조항은 UECIC의 목적과 국제적 성격 아울러 CISG의 부속협약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CISG의 규정내용을 그대로 계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i) 개인적·가족적 또는 가사의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ii) 등록된 거래소에서의 거래, 외환거래, 은행간 지급시스템, 은행간 지급약정 또는 담보나 기타 금융자산·증권에 관련된 결산 시스템 및 매매·대부 또는 점유에 관련된 담보권의 이전, 또는 담보성환매약정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 보유한 금융자산·증권 등에 대한 계약, iii) 환어음·약속어음·양도증서·선하증권·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거나 수익자에게 운송물의 인도 또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증권에는 UECIC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UECIC 예외조항의 적용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물품의 인도를 지배하는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 예컨대 선하증권은 그 자체가 물품의 인도(delivery of goods)를 위해 사용된 경우 마땅히 UECIC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3) 당사자 자치권(party autonomy)

당사자 자치권에 있어 UECIC는 강행법규(imperative law)가 아닌 임의법규(dispositive law)라는 사실을 명료히 하고 있는데, 곧 계약당사자는 UECIC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별 조항의 효력을 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rivate autonomy)에 기한 계약당사자의 이해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UECIC, 제3조).

UECIC 및 MLEC는 여타 법규범의 규정취지에 비할 경우 그 수단과 방법의 다양성, 예컨대 전자자료교환(EDI)·전자우편·팩시밀리 또는 팩시밀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보다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2. 일반규정

1) 정의(definitions)

정의규정에 있어 UECIC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자(originator)와 수신자(addressee)에 대하여 각각 명정하고 있는데, 우선 전자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저장 이전에 이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작성한 당사자를 의미하나, 제한요건으로서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중개인(intermediary)의 역할을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UECIC 제4조, (d)), 후자는 송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를 수신하도록 의도한 당사자를 의미하나, 송신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적용상 유의사항은 UECIC가 송신자 내지 수신자와 여타 중개인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송·수신자간의 계약관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법률효과는 마땅히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된다. 다만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을 위해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각양의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의 역할은 달리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당사자의 관계성을 우선시하고자 함에 기인한다(UN Assembly, 「A/CN.9/571」, paras. 94-99).

한편 UECIC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과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에 대하여 각기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저장 기타 그 밖의 처리(processing)를 위한 시스템으로 [information system], 전체적·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여타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automated message system].

그런데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사실은 정보시스템에 있어 처리(processing)라고 하는 개념의 법적 수용에 대한 사실이다. 곧 UECIC상 정보시스템의 정의는 사실상 MLEC(제2조, (f))와 미국의 UETA(제2조, (11))의 관련 규정을 참고로 성안된 연혁을 보유하는데(UN Assembly, 「A/CN.9/571」, para. 113), 개별 규정 공히 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를 작성·송신·수신·저장 또는 기타 처리를 하는 장치’

로 정의하고는 있으나,⁸⁾ 달리 그 명칭에 있어 MLEC는 UECIC와 동일하게 'information system'으로, UETA는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으로 각기 구분하고 있다.⁹⁾

생각건대 본래 정보시스템은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적인 계약의 협상 내지 체결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electronic system)'으로 이해되고 있음이 입법적 통례라 할 때, 동 명칭은 응당 미국의 UETA 내지 UCITA, 나아가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으로 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⁰⁾

당해 용어의 수용에 따른 법적 실익은, i) 자연인에 의한 검토 또는 행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작 또는 반응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방식으로서의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 UETA, 제2조 (7); UCITA, 제102조 (27))이나, ii) 같은 시각에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UECIC 제4조 (g)), iii) 그리고 전자적 방식이나 전자적 기록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고 이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하에서 이행하거나 또는 당해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통상의 과정에서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록이 특정한 자연인에 의해 검토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 UETA, 제2조 (2); UCITA, 제102조 (7)) 등과의 명확한 개념적 분기(conceptual divergence)를 갈음할 수 있다는 데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UECIC상 정보시스템은 이상의 구분에 따른 실익에 비추어 마땅히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인식·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석(interpretation)

한편 UECIC의 해석에 관한 규정은 CISG 제7조의 내용을 그대로 계수하고 있

8) i) MLEC, Art. 2, (f),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 ii) UETA, Sec. 2, (11),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means an electronic system for creating,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display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9) 이는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UCITA) 제102조 (36)에서의 명칭 내지 조문내용과 동일하다.

10)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9708호 2009.5.22), 제2조 제2호,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에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는데, 이는 달리 UECIC가 CISG의 부속협약으로서 그 지위를 표창하고 있음을 함의한다.¹¹⁾

그런데 UECIC 정의규정상 특히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계약이라고 하는 범명에 비추어 여하히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에 대한 별단의 명시적 규정을 존치해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배경은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전자계약은 종이문서(paper-based document)에 의한 계약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다만 기존의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이 전자계약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수단적(the means of communication) 법적 문제점을 통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 95」, II, A, 1, paras. 1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거래 과정에 있어 각각 분리되어 체결되었던 단계별 개별계약이 정보통신망의 연계(networking)된 결과로부터 일련의 통합된 단일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음이 전자계약의 주요한 특성이라 할 때(北川善太郎, 2002), 곧 국제상거래에서 물품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의 운송, 대금의 지급, 보험계약의 체결, 보관 및 수출·입 통관 등에 연관된 계약이 전자문서를 매개로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동시에 체결되고 있음이 상례라 할 때, 전자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은 입법상 불비라 생각된다.

따라서 UECIC 목적상 전자계약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곧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의제할 수 있음에 무리가 없다면, 가사 전자계약을 어떠한 구체화된 목적물(any specialized subject matter) 또는 형식적 합의수단(method for forming agreement)을 기초로 한 개념이 아닌, 다만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단(mean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즉 전자문서(data message)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당사자의 소재지(location of the parties)

UECIC상 당사자 소재지는 그 적용범위와 국제성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중요한 논점이 된다. 곧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영업소(business place)의 특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을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당해 계약이 국제적인지 그리고 어느 법이 당해 계약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결정

11) CISG를 비롯하여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PICC),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ECL)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에 관한 상세는 심종석(2007)을 참조.

을 신속히 함으로써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Chukwumerije, 2004).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에 있어 영업소의 특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 또는 체결된 시점에 양당사자에 의하여 당해 영업소가 명확히 표시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영업소가 유추될 수 있는 상황을 여하히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이다. 곧 당해 사안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 UECIC 적용상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 관련한 영업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귀결된다.

한편 영업소의 개념을 CISG와 같은 현행의 국제협약하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정보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장비의 위치 또는 그러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과 같은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장비 및 기술의 위치는 적절한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적시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영업소의 충분한 표시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일례로 매도인을 대신한 계약은 매도인의 웹사이트[URL]를 연결해주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의해 매수인과 자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장비 없이 또는 특정 장소에 회사의 약정(terms and conditions) 등을 등록하지 않고서도 물리적 장소와 연관성 없이 정보시스템만의 사용을 통해 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위 이러한 가상기업(virtual companies)의 경우 본인의 영업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UECIC에서는 당사자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그 영업소 표시를 한 당사자가 당해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려진 상황이나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시 당사자가 고려한 상황을 참조하여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그 영업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UECIC 제6조, 1-2).

동 규정의 적용상 유의사항은 어느 장소가 단순히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기술이 위치한 곳, 타방 당사자가 그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는 영업소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

관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는 추정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UECIC의 적용상 이상의 요건은 영업소 특정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UECIC 제6조, 4-5).

3.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

1) 형식요건(form requirements)

UECIC는 CISG가 계약에 있어 형식의 자유를 따르고 있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여, 나아가 CISG 등의 부속협약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UECIC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계약에 그 자유를 확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UECIC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 homolog의 효과를 정한 경우 당해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UECIC 제9조, 1-2).

한편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명의 homolog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i) 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당해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사용된 때, ii) 그 사용된 수단이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생성 또는 유통되는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iii) 당해 기능충족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라면 당해 요건과 효과는 그 충족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UECIC 제9조, 3).

다른 한편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원본의 형태로 활용 가능하거나 보존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원본 homolog의 효과를 정한 경우라면, i)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자체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integrity)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ii) 그리고 전자적 의사표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 그 정보를 활용할 사람에게 현출(display)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UECIC 제9조, 4).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시기와 장소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우선 UECIC상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는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 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거나,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나 송신자를 대리하는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았다면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이에 반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기산되며,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로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그 주소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고,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가 된다. 이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에 수신자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UECIC 제 10조, 1-2).

한편 전자주소가 운용되는 정보시스템이 소재한 장소가 UECIC상 송·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장소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는 제한규정(UECIC, 제6조)에 따라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3) 청약의 유인(invitations to make offers)

UECIC상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문신청을 위하여 상호작용 응용프로그램(interactive applications)을 사용한 제안을 포함하여,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그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UECIC, 제6조).

4) 계약체결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s)은 경우에 따라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에 의제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전자상거래 추이에 비추어 점차 그 사용이 상례화 되고 있다.

입법례에 비추어 전자적 대리인은 i) 자연인에 의한 검토 또는 행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또는 실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동작 또는 반응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방식(UETA, 제2조, (6)),¹²⁾ ii) 메시지 또는 이행에 대하여 조치 또는 회신하는 시점에서 개인의 검토 또는 조치없이 그 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나 이행에 답변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또는 자동화된 수단(UCITA, 제102조, (27)) 등으로 설명된다.¹³⁾

결국 전자적 대리인은 전자적 방식이나 전자적 기록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고 이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하에서 이행하거나 또는 당해 거래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통상의 과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행위 또는 기록이 특정한 자연인에 의하여 검토되지 아니하는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고 할 때(UETA, Sec. 2, (2); UCITA, Sec. 102, (7)),¹⁴⁾ 마찬가지로 그 수단으로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또한 이상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계약체결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에 대하여 UECIC에서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법적 효과를 공히 인정하고 있다(UECIC, 제12조). 이는 생래적으로 UECIC가 미국 UETA를 모델로 하여 성안된 입법연혁에 기초한다.

유의사항으로서 동 규정은 법기능적 차원에서의 임의규정으로 간주되는 바, 곧

12) UETA, Sec. 2, (6) : Electronic agent means 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independently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electronic record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action by an individual.

13) UCITA, Sec. 102, (27) : Electronic agent means a computer program, or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by a person to initiate an action, or to respond to electronic messages or performances, on the person's behalf without review or action by an individual at the time of the action or response to the message or performance.

14) i) UETA, Sec. 2, (2) : Automated transaction means a transaction conducted or performed, in whole or in part, by electronic means or electronic records, in which the acts or records of one or both parties are not reviewed by an individual in the ordinary course in forming a contract, performing under an existing contract, or fulfilling an obligation required by the transaction. ii) UCITA, Sec. 102(7) : Automated transaction means a transaction in which a contract is formed in whole or part by electronic actions of one or both parties which are not previously reviewed by an individual in the ordinary course.

동 규정의 해석에 있어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이 당해 계약상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연인의 개입없이 정보시스템이나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정보시스템이나 당해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당사자에 귀속됨을 함의한다.

5)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

전통적 종이문서를 통해 이행되는 대부분의 계약은 당사자의 필요나 향후 분쟁해결에 있어 참조할 수 있는 유형의 기록(tangible record)으로서 보존됨이 상례이다.

이에 반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이 같은 유형의 기록이 전자문서로 존재하게 되는데, 당해 문서는 대개 계약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특별한 조치가 선결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보존될 수 있거나 그 자체로서 소실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당해 전자문서의 저장·이용·보관·출력 등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편은 국내·외 실정법규범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사후관리로서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UECIC에서도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동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을 통하여 계약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상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위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 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제계약상의 법적 확실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UECIC, 제13조).

6)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error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라 함은 당해 오류를 탐지, 수정 또는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가 생성한 전자문서상의 오류를 의미한다.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i) 당사자가 당해 오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오류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ii) 타방에게 인도하게 하거나 또는 타방으로부터 받은 적절한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당해 정보의 모든 저작물을 파괴한 경우, iii) 당사자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해 정보로부터 그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받지 않았다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오류에 의하여 발생된 전자문서에 구속을 받지 않음이 입법적 통례이다.

아울러 계약당사자간 전자문서의 전송과정에서 변경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경이나 오류를 감지하는 보안절차를 사용할 것을 합의하여, 일방은 그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여 그 변경이나 오류를 감지할 수 있었다면 보안절차를 준수한 당사자는 변경 또는 오류가 있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이 일반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UECIC에서는 동일한 시각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과 교환되는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입력 오류를 범하였고, 그 시스템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i)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오류 사실을 안 직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자신이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ii)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이익 또는 가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오류를 범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철회권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총 4개장 25개조로 구성된 UECIC는 전자상거래를 통일된 국제협약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최초 입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점한다. 입법취지는 국제상거래 계약당사자간 전자문서를 매개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함에 두고 있다. 곧 UECIC는 국제상사계약에 입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전자문서 내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기능상 기술중립성 및 등기능성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국제사법상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표창하고 있다. UECIC는 CISG를 비롯하여 여타 국제협약상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에 관한 부속협약으로서 그 보충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각 규정별 주요 골자와 유의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ECIC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계약당사자간 계약

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되며, 이는 CISG와 마찬가지로 UECIC가 국제협약으로서 국제성을 표창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 경우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청약과 청약에 대한 승낙을 비롯한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당사자 선택에 따른 모든 진술·선언·요구·통지·요청 등을 의미하며,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한 이상의 모든 의사표시로 정의된다.

둘째, UECIC 적용배제의 요건은 개인적·가족적 또는 가사의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등록된 거래소에서의 거래, 외국환거래, 은행간 지급시스템, 은행간 지급약정 또는 담보나 기타 금융자산·증권에 관련된 결산 시스템 및 매매·대부 또는 점유에 관련된 담보권의 이전, 또는 담보성환매약정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 보유한 금융자산·증권 등에 대한 계약, 환어음·약속어음·양도증서·선하증권·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운송물의 인도 또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증권 등이다. 이 경우 유의사항은 물품의 인도를 지배하는 유통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은 그 자체가 물품의 인도를 위해 사용된 경우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셋째, UECIC 정의규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있어 처리라고 하는 개념의 법적 수용에 대한 사실인데, 곧 정보시스템의 정의는 제반 선행 입법례를 참고할 때 대개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적인 계약의 협상 내지 체결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있음이 통례인 바, 이에 동 명칭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인식·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특이할 것은 UECIC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계약이라고 하는 범명에 비추어 여하히 전자계약에 대한 별단의 명시적 규정을 존치해 두고 있지 않은데, 동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가사 전자계약을 어떠한 구체화된 목적물 또는 형식적 합의수단을 기초로 한 개념이 아닌, 다만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단, 즉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개념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UECIC상 당사자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그 영업소 표시를 한 당사자가 당해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려진 상황이나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시 당사자가 고려한 상황을 참조하여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그 영업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적용상 유의점은 어느 장소가 단순히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

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기술이 위치한 곳, 타방 당사자가 그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는 영업소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관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는 추정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형식요건에 기하여 UECIC는 그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당해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는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 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거나, 달리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았다면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기산되며,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로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그 주소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고,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가 된다. 유의사항은 전자주소가 운용되는 정보시스템이 소재한 장소가 UECIC상 송·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장소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는 제한규정에 따라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여덟째,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그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한편 계약체결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고려사항은 동 시스템이 당해 계약상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연인의 개입없이 정보시스템이나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정보시스템이나 당해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당사자에 귀속됨을 함의한다.

기타사항으로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에 기하여 UECIC는 국제계약상 법적 확실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두고 있음과 동시에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

류에 관하여 국제계약상 신의칙에 기한 철회권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UECIC의 규정내용 전반에 관하여 이를 해제하고 당해 규정별 실무적용상 특히 고려하여야 할 유의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생략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 긴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하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UECIC의 지위와 규정별 법적 취지의 부각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된 일면이 없지 않아 그 결과로서 규정별 실무적용상 유의점 및 시사점에 대한 심도있는 법적·상무적 함의를 명료히 추론치 못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배경에는 앞서 적시하였던 바와 같이 UECIC의 연혁에 비추어 그간 국내·외 선행연구가 초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요컨대 본 연구결과가 방대한 단편에 그치고 있는, 곧 연구목적에 기한 생략적 한계를 여하히 극복하고 있지 못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나아가 실무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촉발할 수 있는 단초로서 또한 그 원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진환(2004). **컴퓨터 정보거래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기술과 법. 351-387면.
- 오병철(2006). UCITA상의 전자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무역상무연구**.
- 오세창(2009). **전자통신협약의 해설**. 두남.
- 이충열(2003). UCITA의 주요 논점과 대미 컴퓨터정보거래에서의 대응. **국제상학**.
- 심종석(2004).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과 승낙의 기준. **경영법률**, 223-249면.
- _____(2007).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 **통상법률**, 법무부.
- _____(2009). 무역학의 정체성 및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비판적 검토. **경영교육논총**, 201-207면.
- 최준선(2001).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 한병완(2005).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161-178면.
- 허해관(2004). 국제전자정보거래에 관한 입법동향. **무역상무연구**.
- 北川善太郎(2002). システム契約 - 情報化社会におけるしい契約類型. NBL No. 393. pp.6-24.
- 八尾 晃(2001). 貿易の金融国際取引：基礎と展開. 東京経済情報出版.
- 國生一彦(2001). 米國の電子情報取引法 - UCITA法の解説. 商事法務研究會.
- Eiselen Siegfried(2000). *Electronic commerce and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Jan Grijpink(2001). *New Rule for Anonymous Electronic Transaction? : An Exploration of the Private Law Implications of Digital Anonymity*.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JILT)*. Univ. of Warwick and Univ. of Strathclyde.
- Katsh Ethan · Rifkin Janet(2001). *Online Dispute Resolution : Resolving Confliction Cyberspace*. Jossey-Bass. pp.117-119.
- Okezie Chukwumerije(2004).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Quorum Books. 1994.
-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09708호 2009. 05. 22).
- UN Assembly, 「A/CN.9/571」.

-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
- UN Assembly, 「A/RES/60/21」 .
- UNCITRAL(2001). 「Guide to enactment of the MLEC」 .
- UNCITRAL(1996).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 UNCITRAL(2001).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
- UNCITRAL(1997). 「Model law on electronic fund transfer」 .
- UNCITRAL(2001).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l] Contracts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 .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 「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UECA).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
- 「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html」 .